

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



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(또는 사업주 단체)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·교재교구비·임차비 무상 지원



지원대상

-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



지원수준 및 한도

- 무상지원

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60~90% 범위내에서 한도액 3억원(사업주 단체 6억원)*, 우선지원대상기업은 4억원(공동형은 최대 20억원)까지 지원하고, 교재교구비는 5천만원**(교체시는 3천만원까지)까지 무상 지원

*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단독형 4억원, 공동형은 20억원 한도

**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7천만원 한도

-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

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(사업주 단체)에게 시설 임차비 지원(소요비용의 80%, 연 3억 한도)



신청절차

-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 →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

※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(welfare.comwel.or.kr/escac)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

문의



- 근로복지공단 서울직장보육지원센터 02)2670-0411~27
- 근로복지공단 부산직장보육지원센터 051)320-8182~8
- 근로복지공단 대전직장보육지원센터 042)870-9111~7